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 판결 때 법원이 밝힌 문답 풀이와 양형이유’ 중에서

※ 이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쟁점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전체적인 사실관계 요약>

- 제18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진행 중이던 2010. 5. 19. 오전에 박명기는 양재원에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하여 협상 권한을 위임하면서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문제와 관련하여 박명기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 2010. 5. 19. 14:00경 양재원은 인사동에 있는 ‘오설록’이라는 찻집에서 이보훈과 최갑수를 만나 ‘피고인 곽노현 측이 피고인 박명기 측에 5억 원을 지급하되 피고인 박명기가 후보를 사퇴하여 피고인 곽노현으로 후보 단일화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 피고인 박명기는 같은 날 양재원으로부터 피고인 곽노현이 위 합의를 승인하였다고 보고받았다. 다만 양재원은 합의금액을 ‘피고인 곽노현이 당선되면 7억 원, 낙선하면 5억 원’이라고 보고하였다. 한편, 최갑수는 이보훈에게 위 합의 사실을 피고인 곽노현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하였고, 이보훈도 피고인 곽노현에게 그 사실을 숨겼다.
- 피고인 박명기는 같은 날 피고인 곽노현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기 위해 사퇴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피고인 곽노현은 피고인 박명기와 정책연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 피고인 곽노현은 2010. 6. 2. 치러진 이 사건 선거에서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 그 후 최갑수와 이보훈은 위 2010. 5. 19.자 금전 지급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 2010. 7.경부터 2010. 10.경 사이에 피고인 박명기와 양재원, 김진수 등은 최갑수와 김성오 등 피고인 곽노현의 선거운동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위 2010. 5. 19.자 금전 지급 합의의 이행을 주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박명기는 피고인 곽노현의 교육감 직무실로 2차례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곽노현과 언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2010. 5. 19.자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 2010. 10. 8. 국정감사에서 피고인 곽노현은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피고인 박명기가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으니 내용을 꼭 알아보아라.’는 조언을 듣고 박상주와 김윤태에게 순차적으로 ‘후보 단일화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 2010. 10. 중순경 피고인 곽노현은 김윤태를 통해 ‘이보훈과 양재원이 2010. 5. 19. 금전 지급 합의를 한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2010. 10. 20.부터 2010. 11. 초순경 사이에 이보훈과 2차례, 최갑수와 1차례 만나 회를 내며 위 보고의 진위를 확인하였다.

- 2010. 10.경부터 2010. 11.경 사이에, 피고인 광노현은 피고인 강경선과 김윤태에게 피고인 박명기와의 화해를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 2010. 11. 17. 및 2010. 11. 19. 피고인 강경선과 김윤태가 피고인 박명기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박명기는 2010. 5. 19.자 금전 지급 합의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 광노현에 대한 분노, 선거비용 관련 채무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피고인 강경선은 위 합의는 피고인 광노현이 보고받거나 승인한 바 없어 효력이 없다고 말하면서, 다만 피고인 박명기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그 후 2010. 11. 23. 피고인 박명기, 피고인 강경선, 이보훈 등이 함께 만나 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가졌다.
- 2010. 11. 28. 피고인 강경선과 이보훈의 주선으로 피고인들과 이보훈이 함께 만나 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가졌다. 그 술자리에서 피고인 박명기와 피고인 광노현은 악수와 포옹을 나누고 시를 읊는 등 화해의 계기를 가졌다. 2010. 12. 4.에도 피고인 박명기와 피고인 강경선, 이보훈이 함께 만나 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가졌다.
- 2010. 12. 초순경 피고인 강경선은 피고인 광노현에게 카드 돌려막기 등을 하고 있는 피고인 박명기의 경제적 고통과 포옹의 필요성, 향후 분쟁 재발 방지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 박명기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자고 말하였고, 피고인 광노현은 그 말에 동의하였다. 한편 그즈음부터 2011. 1.경 사이에 피고인 박명기는 김윤태를 수차례 만나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부채문제 해결을 요청하였다.
- 2010. 12.경부터 2011. 1.경 사이에, 피고인 강경선은 피고인 광노현에게는 ‘3억 원을 주자.’고 하고, 피고인 박명기에게는 ‘2억 원 이상은 안된다.’고 하였다. 피고인 광노현은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반대하였고, 피고인 박명기는 2억 원은 너무 적어서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 피고인 강경선의 거듭된 설득으로 피고인 광노현은 2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박명기는 일단 2억 원을 받겠다고 하였다.
- 2010. 2. 19.부터 2010. 4. 8.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인 광노현은 피고인 강경선을 통해 현금으로 함께 2억 원을 피고인 박명기에게 전달하였다.
- 2010. 4. 초순경 피고인 박명기, 피고인 광노현, 박상주 등이 만나 식사를 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광노현은 교육감 정책자문기구 부위원장의 선출방식이 호선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박명기가 부위원장이 될지 알 수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 박명기는 이에 항의하였다.
- 2010. 8. 18. 피고인 박명기는 피고인 강경선을 만난 자리에서 추가로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물었으나 피고인 강경선은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의 쟁점들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양형조건	박명기	곽노현	강경선
후보 단일화 협의 과정	○ 선거비용 보전 명목금전 지급 요구	○ 거절할 것을 지시	○ 관련 없음
2010. 5. 19.자 금전 지급 합의 관련 정도	○ 양재원에게 합의 부탁하고, 사후에 합의 성립되었다고 보고받음	○ 합의 자체를 알지 못함	○ 관련 없음
합의 이후의 정황	○ 합의 이행 요구 ○ 그 요구 과정에서 문건 작성·교부, 윤리적 비난, 대화 내용 녹음 시도, 폭로 언급 등이 이뤄짐	○ 금전 지급 합의 사실 알기 전까지 요구 무시 ○ 2010. 10. 중순경 금전 지급 합의 사실 알고 난 직후에도 2010. 10. 22. 경 한차례 책임지라는 요구 거절 ○ 2010. 11.경 피고인 강경선을 통해 화해시도	○ 피고인 곽노현의 부탁으로 관여하기 시작
대가제공·수수 동기	○ 채무부담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해관계	○ 윤리적 책무감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합	○ 피고인 박명기와 피고인 곽노현의 화해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
주장하여 온 금액	7억 원+ a → 7억 원 → 3억 원	1억 원 → 2억 원	2억 원~3억 원
범행 후 정황	○ 2억 원 중 1억 3,000만 채무 변제 사용, 나머지 다른 용도로 사용 ○ 4개월 후 추가 지급 가능성 타진	○ 수수자와 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없음 ○ 2억 원 제공시 추가 제공 불가 입장 표명	○ 2억 원 제공 당시 추가 지급 요청 가능성 인식